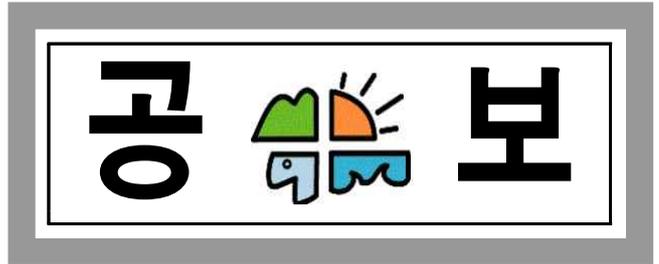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1434호 2022년 12월 5일(월)

공 고

- 속초 도시관리계획(도로: 소로1-15호선) 결정(안) 재공람·공고 2

속초시 공고 제2022-1186호

속초 도시관리계획(도로: 소로1-15호선) 결정(안) 재공람·공고

1. 속초 도시관리계획(도로: 소로1-15호선) 결정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,
2. 도시관리계획 결정(안)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재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·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재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12월 5일

속 초 시 장

가. 재공고목적: 속초 도시관리계획(도로: 소로1-15호선) 결정(안) 재공람·공고

나. 재공고내용: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1-15호선) 신설

- 결정 조서(안)

규		모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형태	비 고
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
소로	1	15	10	국지 도로	309	중로1-20 (노학동 1140도)	중로2-2 (노학동 1-43도)	일반도로	신 설

다. 재공람기간: 재공고일(신문게재일) 다음날로부터 14일간

라. 재공람장소: 속초시청 건설도시과 도시계획팀(☎ 033-639-2447)

마. 관계도서: 생략(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공람장소에 비치한 도서 참조)

바. 의견제출: 재공람기간 내 재공람장소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